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청산금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23,197,745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천마재배 동업계약의 체결
  - 가. 원고와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경 피고 소유의 ○○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의 답 952㎡ 및 같은 리 ○○ 전 2,770㎡에 동업으로 천마를 재배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우선 천마를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9,420,000원을 반분하여 사기0,000원을 출연하여 출자를 하였고, 피고는 천마재배에 관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 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위 토지를 제공하고, 원고는 천마재배기술이 있어 재배기술 및 특수농기계조달 등을 부담하여 이를 각 출자하면서 이러한 천마재배로 인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서 위 토지에 천마를 식재하여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.

### 2. 동업계약의 종료 및 작물보상금 수령

- 가. 그 뒤 천마를 재배하는 도중에 피고 소유의 위 2필지의 토지가 댐건설(수 몰)지역으로 지정되었고, 20○○. ○. ○○.경 최종적으로 국가로 협의 취득되 었습니다. 이로 인하여 원·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천마재배 동업계약은 그 목적 달성불능의 상태가 되어 이 무렵 종료되었습니다.
- 나. 그런데 국가로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(토지보상금은 피고가 수령)과는 별도로 작물보상금이 책정되었는바, 피고는 천마를 자신이 단독으로 재배한 것 같이 허위로 작물보상금 신청을 하여 20〇〇. 〇〇. 〇 위 토지에 식재된 천마에 관한 작물보상금 66,395,490원을 수령하였습니다.

### 3.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 상황 및 청산의무 불이행

- 가.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될 당시 위 계약에 따른 손익은 결국 위 작물보상금만이 남았고, 위 동업계약의 이익의 범위에는 비단 천마를 재배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보상금과 같은 일체의이익도 포함되었으므로 동등한 지분을 가지는 원고와 피고는 위 작물보상금을 각 33,197,745원씩 분배하여 위 동업계약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.
- 나.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위 보상금을 수령한 뒤 이에 대하여 각 지분에 따른 청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원고에게 10,000,000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 중 미지급한 23,197,745원 및 이에 대하여 작물보상금 수령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

천마경작사실확인서

1. 갑 제2호증

사실확인서

1. 갑 제3호증

예금통장

1. 갑 제4호증의 1,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
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